
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

제10판

(2023. 8.)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[주요 개정사항]

주요 개정사항	
○ 지원대상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	
○ 지원기간: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	
○ 지원범위: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	
○ 서식: ‘법정감염병신고서’ 미작성에 따라 ‘의사소견서’ 제출 필수	
○ 부록: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	
○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Q&A: 변경된 지원대상·기간·범위에 따라 Q&A 내용 수정	

목차별 주요 개정사항		
목차	구분	개정사항
I. 개요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○ 지원기간: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○ 지원범위: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
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에 따라 1. 감염병 신고 내용 삭제
III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IV. 서식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식 1: 「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」에 치료비 의사소견서 등 유의사항 변경
V. 부록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록 1: 「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」 삭제

[목 차]

I. 개요	1
1. 지원목적	1
2. 근거	1
3. 지원대상	1
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	2
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	4
1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	4
III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	6
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	6
IV. 서식	7
「서식1」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	7
「서식2」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 <삭제>	8
「서식3」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<삭제>	9
「서식4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<삭제>	10
「서식5」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 <삭제>	11
「서식6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<삭제>	12
「서식7」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<삭제>	13
IV. 부록	14
「부록1」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<삭제>	14
「부록2」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<삭제>	15
「부록3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Q&A	16

[일러두기]

-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·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·운용하는 것으로서,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을 따름
- 이번 제10판은 '23. 8. 31.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'23. 8. 31. 검체채취자부터 해당 지침 적용
-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

1. 개요

1. 지원목적

-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·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

2.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감염병예방법」”)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,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) 등
 -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 - 다만, 외국인 중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

3. 지원대상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

▶ 지원대상 세부기준

-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II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
- (중환자실 격리실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
- (중증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I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*

* 비침습인공호흡기, 고유량 산소요법, 침습인공호흡기, ECMO, CRRT

- (예외대상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(본인부담금)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(*20.8.24.~)

[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지원]

지원 분류	지원범위	대상 국가▶ 분류 기준	비고
전액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전액 지원	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	-
미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미지원 (전액 본인 부담)	재외국민 미지원 국가	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
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(본인부담금)만 지원 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	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

▶ “대상 국가” 관련 상세내용

- (조회 방법)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*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

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> 알림·자료 > 법령·지침·서식 >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

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

- (지원기간)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

-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

▶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

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
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
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투석이 필요한 환자
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

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」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

- **(지원범위)**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,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

▶ **지원범위 상세내용**

- **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**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
- **(미지원)**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

- **(필수비급여)**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에 따른 **필수비급여** 항목은 지급▶

▶ 「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」의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3)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
- **(지원 방식)**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
- **(지원 예산)**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(국비 50%)하며,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(국비 100%)

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

1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

- (청구)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*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

* 환자부담금: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, ③필수비급여항목 등

▶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

- (진료비세부내역서)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
- (의사소견서) 의사소견서 상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-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), △진단명, △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- (외국인 치료비)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
- (환자가 납부한 경우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

- (비용지급)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(보건소 등)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,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
-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(보건소 등)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
[치료비 지급 기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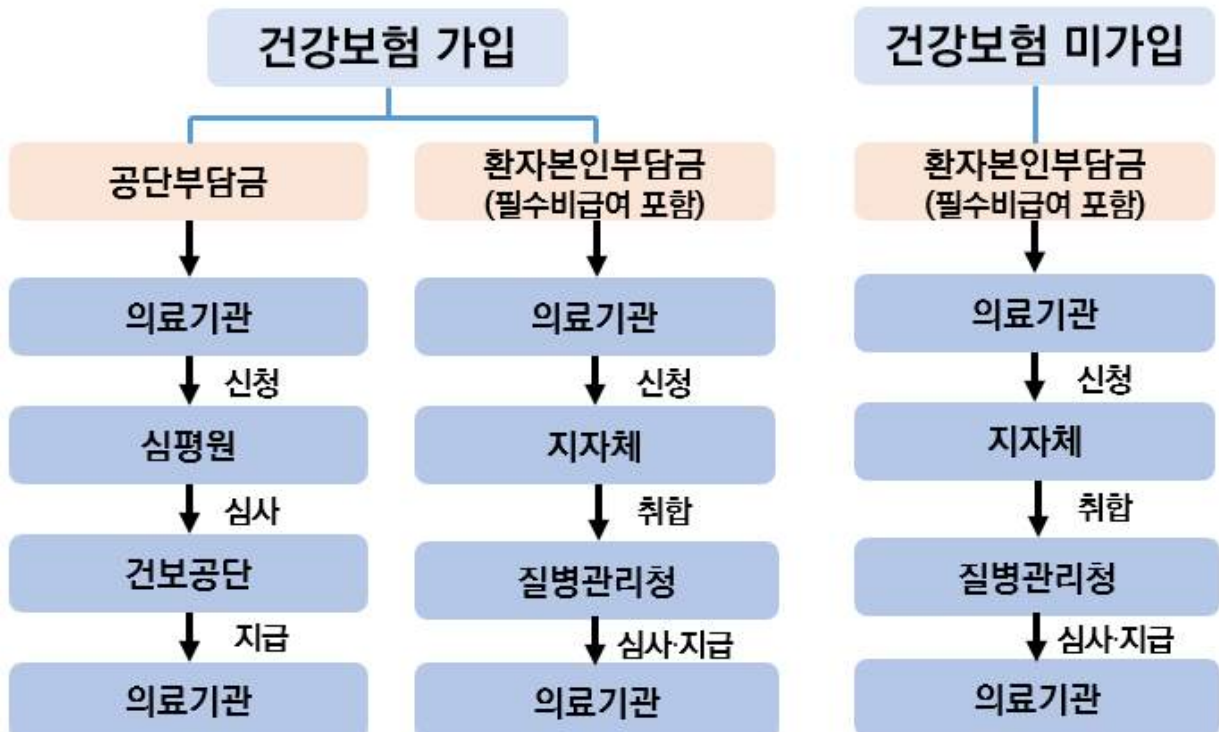
분류	내국인		외국인	
	가입자	미가입자	가입자	미가입자
요양급여 공단 부담	○ (공단)	-	○ (공단)	-
요양급여 본인 부담	○ (지자체)	○ (지자체)	○ (질병청)	○ (질병청)
필수 비급여	○ (지자체)			
비급여	전액 본인 부담			

〈 청구·지급 절차 〉

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·지급 절차



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·지급 절차



Ⅲ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

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
제출서류	
비용 신청서	○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
공통서류	○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*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*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
	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	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*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*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	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*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,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
입원·격리대상자 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○ 통장(계좌) 사본 1부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○ 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○ 사업자등록증 1부 ○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

서식 1

입원·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

입원·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		접수일자
신청인 (개인 또는 의료기관)	성명(의료기관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)
	전화번호	입원·격리(대상자와의 관계)(의료기관은 작성 생략)
	주소	
입원·격리 대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국적
	신고일자	
	주소	
입원·격리 세부사항	진단명	
	격리시작일	격리해제일
	확진검사 확인일	
진료비	청구금액(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)	원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·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 ²⁾

비용 신청서	1.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	
공통서류	<input type="radio"/>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*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*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
	<input type="radio"/>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	
	<input type="radio"/>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*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*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
	<input type="radio"/>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*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,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	<input type="checkbox"/>
입원·격리대상자 (또는 보호자)	<input type="radio"/> 통장(계좌) 사본 1부 <input type="radio"/>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	<input type="radio"/> 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신청 시 제출서류	<input type="radio"/> 사업자등록증 1부 <input type="radio"/>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) 「신고일자」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·격리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
- 2)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서식 2

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

<삭제>

서식 4

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

〈삭제〉

서식 5

입원 · 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

〈삭제〉

서식 6

코로나19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

〈삭제〉

서식 7

입원 · 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

〈삭제〉

부록1

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

〈삭제〉

부록 2

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

〈삭제〉

1.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

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

- ①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
 - ※ '23. 8. 31.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
- ①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
- ② (10일 이내 내원)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,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
 - 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0.) 내원(일반 병실 등 입원) → (9.11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2.) 중증처치 시작
- ③ (중환자실 격리실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'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'*가 산정된 경우
 - * 수가코드: AJ010, AJ011, AJ020, AJ021
- ④ (중증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I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
 - 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

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

※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I.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

단계	정의	중증도 분류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
5	비침습인공호흡기 / 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 / high flow O2)	위중증
6	침습인공호흡기 (invasive ventilation)	
7	다기관손상 / ECMO / CRRT (multi-organ failure/체외막산소공급/지속적신대체요법)	
8	사망(death)	사망

Q2.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?

-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(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), 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▲전액지원, ▲미지원, ▲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

지원 분류	지원범위	비고
전액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전액 지원	-
미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미지원 (전액 본인 부담)	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
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(본인부담금)만 지원 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	격리실 병실료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

- (조회 방법)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*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(입국일 기준)

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> 알림·자료 > 법령·지침·서식 >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

Q3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기간?

-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

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

-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

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3.) 내원 → (9.14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5.) 중증처치 시작

**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20일 초과)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
◆ 지원기간



2. 지원 및 청구범위

Q4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

- **(지원범위)**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,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

▶ 지원범위 상세내용

- **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**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
- **(미지원)**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

- **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** 중증처치 기간 중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분류번호 ‘가-9 중환자실 입원료’, ‘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*’만 지원하며 식비,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
*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(수가코드: AJ031) 포함하여 지원
- **(미지원)**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
 - **(응급실)**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
 - **(퇴원약)**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* 미지원
* 퇴원약제비, 퇴원약조제료, 외래의약품관리료
 - **(확진환자 투석)**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(OH011) ‘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’에서 지원사항 없음
 - **(코로나19 PCR)** 코로나19 PCR 검사비는 ‘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’에서 지원사항 없음

Q5.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?
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**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지원**

Q6.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?

- (확진환자 투석)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(OH011)는 관련 수가 종료 및 본인부담률 변경되어 투석관련 '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'에서 지원사항 없음
- '23. 8. 31. 진료분부터 적용되며, 수가 변경에 따라 8.31. 진료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항 없음
- * 검체채취일이 '23.8.31. 이전인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의 격리 및 행위 수기도 '23.8.30. 진료분까지만 지원

Q7. 중증치치 중인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(약국)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 여부는?

- 치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(약국)에서 처방하는 경우 부대비용(조제료 등) 지원
-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중증치치 받지 않은 환자는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미지원

Q8.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?

-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기에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

Q9.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?
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, 중증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
-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

Q10.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(요양)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(요양)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(코호트 격리) 지원 여부는?
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호트격리 관련 비용 미지원

Q11.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·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?

- 코로나19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로 중 필수비급여 항목은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(서식3) 제출 시 지원
 - ※ 질병청·지자체에서 치료비 심사 시에 코로나19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(20.7.9.)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(서식3) 제출
- **(의사소견서)** 치료비 청구를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하여 제출 시 해당 비용지원
 -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‘의사소견서’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‘법정감염병신고서’로 갈음할 수 없어 ‘의사소견서’ 제출 필수
 - ※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
- **(약제·치료재료)**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(서식3) 제출 시 지원
- **(병원비품)**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,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
 - 환의, 체온계, 이불, 시트, 대변기, 소변기 등
 - 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-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

Q12.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?

-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
 - 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7조 및 「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」 참조
- 다만,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

Q13. 입원·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‘법정 감염병 신고서’로 갈음되는지?

-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‘의사소견서’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‘법정감염병신고서’로 갈음할 수 없어 ‘의사소견서’ 제출 필수
 - ※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
-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
Q14.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,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?

-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·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
 -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·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

Q15.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?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

3. 기타

Q16. 산재,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?

- 보훈환자,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, 기존 제도(보훈, 산재)에서 보호(지원)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(필수비급여)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·격리 치료비로 지원